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8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 김석기·성일종·인요한

서천호 · 서명옥 · 강대식

우재준 • 유용원 • 김기현

박정하 · 강선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·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· 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'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반영'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

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수립 등에"를 "수립,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·반영 등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(국가관광전략회의) ① 관	제16조(국가관광전략회의) ①		
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			
대한 수립·조정, 관광진흥계획			
의 <u>수립 등에</u> 관한 사항을 심	<u>수립,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</u>		
의 •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	실적의 평가·반영 등에		
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			
둔다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